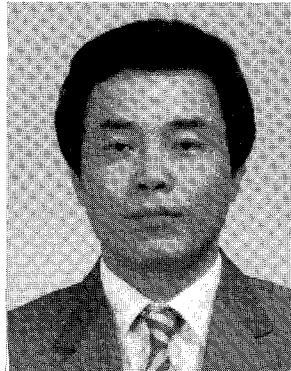


백세미에 대한 별도 방역관리 마련 추진

김 창 섭 농림부 가축방역과장



농림부는 지난해 11월 추백리·가금티푸스의 사전예방을 통해 양계농가에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하고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를 강화키로 하고『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동 대책은 난계대(卵繼代) 전염병인 추백리·가금티푸스를 종계장·부화장 단계에서 관리하여 육계·산란계 등 일반 실용계 사육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추백리·가금티푸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들에 감염된 종계를 도태할 경우 발생하는 종계장의 경제적 손실과 영업상 불이

익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추백리·가금티푸스 양성종계군의 도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태장려금(1수당 5,000원)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으며, 도태권고 등 방역기관의 조치에 따르지 않는 종계장·부화장은 축산전문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제재를 강화키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일반 종계장은 시·도 가축방역 기관에서, 원종계장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전담관리를 하도록 역할분담을 하였으며, 종계용 배합사료에 살모넬라 미검출 기준을 적용키로 하였다.

농림부는 동 대책의 추진에 따른 종계·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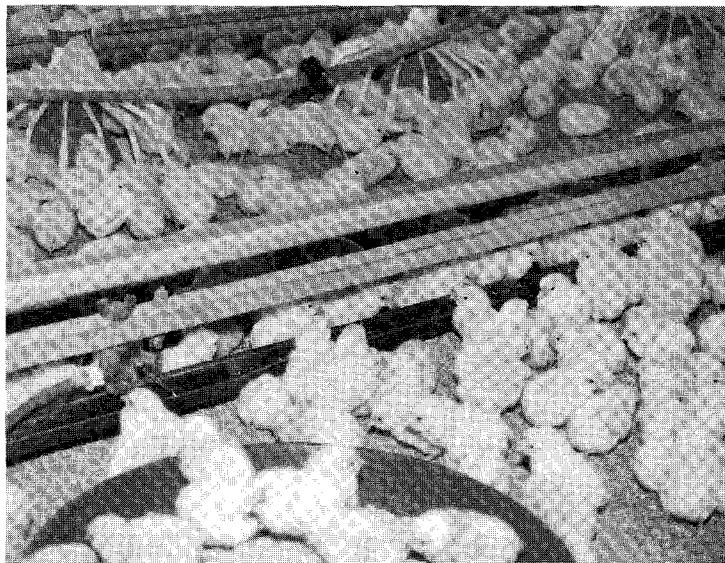
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 5월 1일전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하고, 검사기관의 추백리 · 가금티푸스 검사 및 양성종계군 이동제한 · 도태 등 방역조치 적용에 앞서 종계장 자율적으로 자가검사 및 자율도태를 실시토록 당부한 바 있다.

농림부는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 강화대책』 발표에 이어 12월 동 대책의 내용을 담아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농림부고시 제2004-74호, 2004.12.6)』을 제정하였다. 기존의 “종계장위생관리요령” 및 “추백리방역실시요령”을 통폐합하면서 제정된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은 적용이 유예되었던 일부 조항까지 포함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동 방역관리요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역관리요령 적용대상을 축산법령에 따라 등록된 종계장 및 부화장(위탁사육농장 포함)에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백세미용 일”을 생산하는 산란실용계 농장에 대해서도 종계장 수준의 방역관리를 요구하는 종계업계와의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둘째, 그간 행정지도와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조건으로 관리하면 종계에 대한 가금티푸스 예방접종 금지를 명문화하고 추백리 · 가금티푸스 검진 1개월 전부터 항균제 사용도 금지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추백리 · 가금티푸스는 검진(항체검사)을 통해 감염종계를 색출 · 도태해야 하는데 예방접종을 실시한 개체는 항체가 생겨 감염종계를 구별해낼 수가 없게 된다.

셋째, 종계장과 부화장에서 종계, 씨알, 병아리 등의 거래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



로부터 2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여 추백리 · 가금티푸스 발생 시 효율적인 농장추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넷째, 시 · 군별 관할 종계장 · 부화장에 대해 정기적(분기 1회) 점검을 실시하여 예방접종 금지 및 거래기록 작성 · 보존 의무 준수여부와 사육현황을 조사토록 하여 검사대상 계군의 정기적인 파악을 통한 체계적 관리 도모하였다.

다섯째, 그간 적용이 유예되었다가 금년 5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추백리 · 가금티푸스 검사 등 방역관리에 관한 내용이다(별첨 참조).

동 방역실시요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종계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백세미용 일”을 생산하는 산란실용계 농장에 대해서도 종계장 수준의 방역관리를 실시해 달라는 요구이다. 농림부는 이러한 종계업계의 요구에 대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계장 · 부화장방역관리요령』은 종계장 ·

| 특집 ·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시행을 앞두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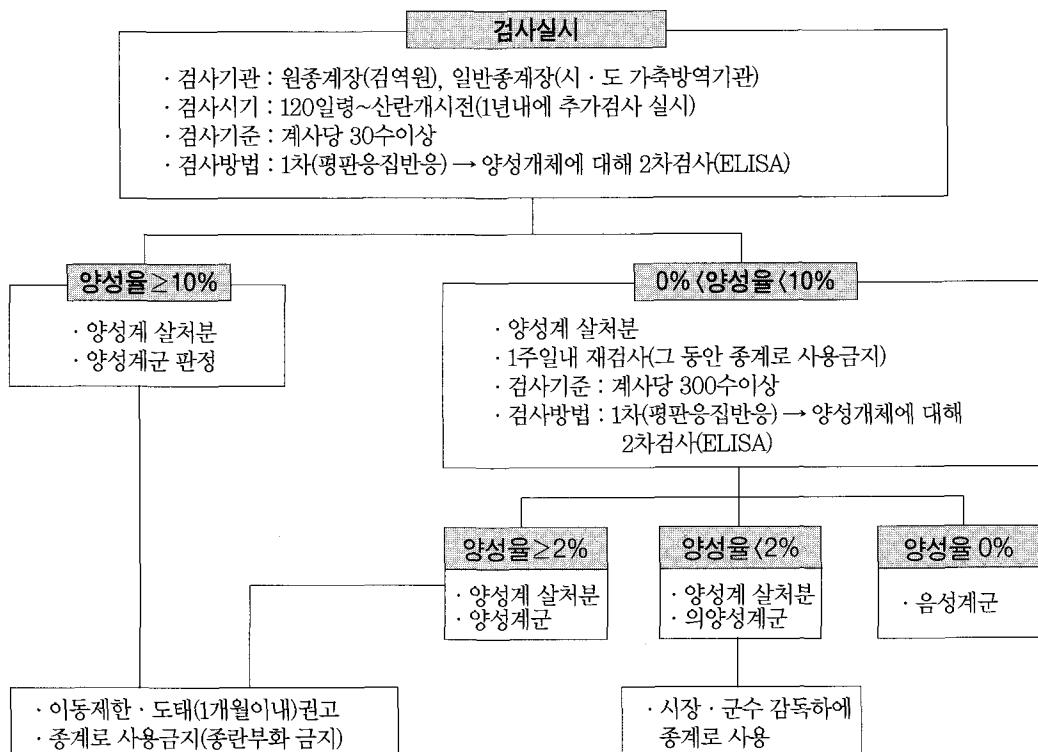
- 부화장 단계에서 살모넬라성 난계대(卵繼代) 전염병인 추백리·가금티푸스의 사전예방을 통해 육계·산란계농장에 건강한 병아리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방역관리 규정을 담고 있다.
- “백세미용 알”을 생산하는 산란계농장이 비록 축산법령의 규정에 의한 종계장은 아니지만 부화용 알을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종계장에 준하는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은

인정된다.

- 그러나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농장은 종계장과는 달리 현재 연간계획에 따라 선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인 사육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축산업 등록제 시행에 따른 등록시한인 2005년 12월 26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은 종계에 대한 추백리·가금티푸스 검사방법 및 검

〈별첨〉

추백리·가금티푸스 검사절차도



사결과에 수반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종계와는 달리 가금티푸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계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실시를 금지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 따라서 현재로서는 종계장 · 부화장 방역관리 강화대책을 착수하는 단계로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서 종계장의 방역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백세미용 알” 산란농장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육현황 및 경영형태 파악 이후 별도의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다만, 현재로서는 부화장에서 백세미용 알과 병아리의 거래기록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여 추백리 · 가금티푸스 발생시 효율적인 농장추적을 가능케 할 시스템을 구축코자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농림부는 종계업계의 건의를 감안하여 백세미 생산 · 유통 형태, “백세미용 알” 생산 산란실용계 농장의 주기적 실태파악 방안, 추백리 · 가금티푸스 예방접종 금지 및 검사 방안, 양성계군에 대한 조치 등 방역관리 방안에 대하여 종계업계의 의견을 요청한 바 있으며, 종계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별도 방역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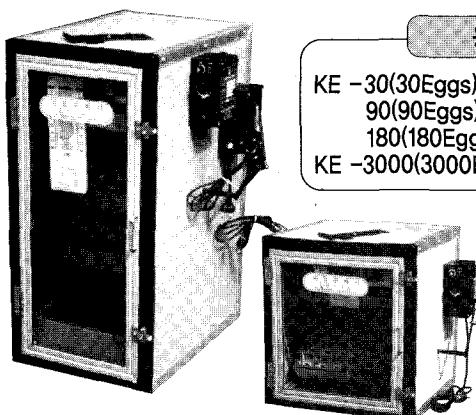
은조 자동 부화기

생 산 품 목

소형, 중형, 부화기 특수조류 부화기 주문제작

부화기의 종류

닭, 꿩, 오리, 타조, 칠면조 등



용량

KE - 30(30Eggs)	300(300Eggs)
90(90Eggs)	500(500Eggs)
180(180Eggs)	1000(1,000Eggs)
KE - 3000(3000Eggs)	

발생기

KEB-500(480Eggs)
KEB-700(720Eggs)
KEB-1,000(1,050Eggs)
KEDB-3000(3,000Eggs)

육추기, 겉란기



은조부화기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팔야리 741-1

전 화 : (031) 575-0759

http : //www.eunjo.co.kr